

제439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15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1)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2)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0)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9)
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2)
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4)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2)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2)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30)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5)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2)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0)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1)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0)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2)

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3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7)
3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7)
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5)
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6)
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6)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8)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3)
4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4)
4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2)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1)
4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3)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0)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7)
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5)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5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5)

5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5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60.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61.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8)
 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8)(추가)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9)(추가)

상정된 안건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1) 5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2) 5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5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5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0) 5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9) 5
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2) 5
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4) 5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2) 5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5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5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2) 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30) 5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5) 5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2) 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0) 5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1) 5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5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5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5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5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5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5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0) 5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5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5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2) 5
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5
3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7) 6
3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6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7)	6
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5)	6
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6)	6
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6)	6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8)	6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6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6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3)	6
4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4)	6
4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2)	6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1)	6
4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3)	6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6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6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6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6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6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6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0)	6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7)	6
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6
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6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5)	6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6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6
5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5)	6
5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6
5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6
60.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7

61.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8)	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3
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8)	43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9)	43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백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1)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2)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0)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9)
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2)
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4)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2)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2)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30)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5)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2)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0)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1)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0)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2)
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3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7)
3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7)
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5)
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6)
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6)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8)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3)
4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4)
4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2)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1)
4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3)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0)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7)
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5)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5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5)
5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5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60.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61.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8)

○**소위원장 백종현**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61항 예방접종관리법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수엽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안녕하십니까? 복지부1차관 현수엽입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등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동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서 12조에 따라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예산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장시간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규율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실내 오염물질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2025년 기준 6만 9000여 개에 달하는 경로당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지역사회 노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관리 필요성의 차이 및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과의 관계,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과 규율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노인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재 지금 정부 내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고 비용의 지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보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말씀 잘 이해했고요.

말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한 법령에서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제가 다시 그쪽으로 개정안을 냈든, 이렇게 발의한 법안이라 그런데…… 그러면 공기질 관련된 법은 어느 부처 소관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요. 제3조의 제11호의……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 나오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입장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공기질 할 때 1000㎡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기존에 1000㎡ 이상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로 하도록 감독도 하고 측정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1000㎡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현재 어떤 법령이 있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에서 1000㎡ 이하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상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상은 여기 규정돼 있고 이하는 규정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이하를 저쪽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법을 발의하더라도 다음번에 알고 해야 되는 게, 그러면 1000㎡ 이하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에 법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지 않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복지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 부처에 계시면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그게 관련 법을 할 때 공기질 할 때 복지부 의견도 문의했을 텐데, 과거에 이 법을 할 때 기후에너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쪽에서 당연히 복지에 관련된 것은 복지부의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요, 이 법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 1000㎡ 이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법 5조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2조에는 측정기록 보관, 8조에 관리, 15조에 비용 보조가 있어서 정부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했다고 추정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1000㎡ 이하는 대상도 되고 좀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 이하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작은 것도 있다 보니, 그러니까 1000㎡라는 기준을 왜 했는지도 사실 그 부처에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말의할 때 그쪽 부처 의견 문의를 하고 일단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김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단체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6만 9000, 약 7만 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정도 되는데 이 경로당 회장들한테 어떤 설치·운영, 관리 의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고.

실내공기 청정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단 한 7만여 개 되는 경로당 회장님들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기청정기 시설을 거의 다 해 줍니다. 저도 단체장을 할 때 저희 경로당 전체 공기청정기를 다 해 주고 큰 데는 몇 개씩 놔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제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모를까 정부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잘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경로당이 지하에 있는 또는 지상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경로당의 1층은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시고 2층은 할아버님들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 할아버님들도 2층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상 사고도, 내려오면서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장 할 때는 2층을 거의 다 새로 짓는, 경로당은 2층은 다 없앱니다. 다 없애고 1층으로 다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놀이터의 건폐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하려면 너무 좁아요, 경로당이. 1층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지어 주는데 2층이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거의 폐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게끔

제가 사실은 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상정을 안 했어요. 이런 것도 좀 상정을 해주셨으면……

많지가 않지만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꼭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엘리베이터를 놓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약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법……

그리고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때는 대부분 2층을 안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부득이하게 2층을 짓는 이런 경로당들은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지자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다음에는 꼭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정 정도 공기순환기를 설치해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치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혹시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23년부터 25년까지 이 설치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고지원 포함해서……

○전진숙 위원 차관님, 기후에너지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관련된 법이 나와 있으면 최소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5398대, 24년에 3180대, 25년에 3148대입니다.

○전진숙 위원 전국 경로당 개수에 따라서 전체가 설치가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아닙니다.

○전진숙 위원 어느 정도나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실내공기질법 관리 대상인 노인요양시설만……

○전진숙 위원 요양시설만 되어 있고 오늘 주제는 경로당이잖아요. 실제로 지역에 가면 많은 경로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예 법으로 규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냉난방 시설과 냉난방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처라 하더라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 백선희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내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호흡기질환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 기준점인 1000㎡를 평형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0평 이하의 소규모,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도 검토의견이 있다시피 이 부분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가의 문제와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요양시설처럼 생활시설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곳이거든요, 일자리 교육을 받을 때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공기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1000m² 이하 되는, 약 300평 이하 되는 요양시설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최봉근** 노인정책관 최봉근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약 1000개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차관님께서도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공기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동의합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공기질도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법에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 위원** 짧게만……

○**소위원장 백종현**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그러니까 공기질을 관리한다고 하는 게 어떤 오염물질을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있는 시설과 잠깐 거쳐 가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 어떤 시설의 성격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자연 환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아닌 시설이 있어서 면적과 이용자의 특성, 대상 물질, 관리 방법에 따라서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최보윤 위원님.

○**최보윤 위원** 법안 취지가 정말 좋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의사일정 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1번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 도입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웅 의원안과 임종득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차이는 임종득 의원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김기웅 의원안이 지원 내용과 비용 지원 및 하위법령 위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행지원사업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이동부터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과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실시 중입니다. 동 사업은 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와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진료과정의 돌봄 및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동행지원사업과 동 시범사업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행지원사업의 도입을 통해 이동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의료기관 이용 절차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진료·검사 및 의약품 수령 등 의료기관 이용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 등의 동행·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 추진 내용과 결과 등은 개정안의 동행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준, 예산 규모 등 사업 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제2조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에는 가사활동, 보조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이 서비스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통합돌봄법에 의해서도 이미 18조 2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근거 법을 가지고 지역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제가 또 낸 거라, 여기에 법을 좀 더 명확하게 내용들을 기술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적절히 알아서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굳이 나쁘지는 않지 않나요? 굳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나요? 할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 자체를 법제화하는 게 복지부에서 왜 부담스러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 통돌법에 의한 통돌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밖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해할 소지는 모르겠고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법에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굳이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건지 복지부 입장이 잘, 언뜻은……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일단 문제 드러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좋은 법안이라고 보고요. 사실 돌봄통합지원법의 그런 부분, 지금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을 임의규정으로 두지 말고 의무규정으로 뒤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법을 하나 또 만드는 것보다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요양 통합돌봄법에서 잘 다듬으면 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김기웅 위원님 제안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부가 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통합돌봄법에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제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는 지금 실제로 동행 서비스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랑 관련해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그 외에 아직 수급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맞고 지금 초기 단계라서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또 어떤 모델이 될지 필요한데……

○**서영석 위원**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최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운 위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법안이고 다만 법체계상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러면 김기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 내용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은 어떠실지 의견 드립니다.

○**김교홍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종헌** 백선희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백선희 위원** 예, 괜찮습니다.

최보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통합돌봄법의 주 대상이 어르신들이어서요.

○**소위원장 백종헌**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위원장님, 뒷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경로당 시설경비가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예.

○**전문위원 박동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시설 또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 또는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원안이 있는데요, 김기웅 의원안이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개선권고 사항도 있고 법령에 대해서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나누어서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2025년 기준 6만 9000여 개가 있습니다.

연로한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경로당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경로당 환경개선 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능보강 사업비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액 지방비로 지원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시행령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또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랑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지금 정부 내부에서는 이 부분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가 않아서 신중 검토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차관님의 고충의 말씀을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경로당이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데는 경로당 지원을 해서 조금 시설 개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데는 상황이 완전히 어려워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거는 일부분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시설 개선도 있지만, 여기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아주머니들 3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봐서 29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없어요. 일할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비에서 일부 10만 원, 15만 원씩 추가로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3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봐서 반찬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근무하는데 누가 29만 원 받고 하겠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박용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말씀을 좀 해 보셔야지요.

○**소위원장 백종헌** 답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29만 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적극 검토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승강기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김교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29만 원, 과장님이 오셨던가요?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어떤 데는 50%, 60%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어떤 데는 10% 미만인 데도 참 많습니다. 이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급식도우미도 마찬가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공익형 일자리, 지금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29만 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익형 일자리가 약 80만 원 정도 중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공익형 일자리를 급식도우미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공익형 일자리에 약 80만 원 정도 되는 급식도우미를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주 5일 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만났는데 항의가 굉장히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5일 급식을 주겠다

고 그랬는데 정부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9만 원 받고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정부가 잘 책임을 져야 된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공익형 일자리에다 약 6만 9000개~7만 개 되는 29만 원짜리를 약 8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든지, 공익형 일자리를 또 줄이면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겠지요.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이걸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참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도우미 하는 데 있어서는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공익형 정도에 버금가는 급식도우미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아까 두 분 공통된 말씀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앞에 김교홍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제가 있는 지역구의 사회복지 예산이 72%예요, 자치구가. 광역 단위는 거의 35%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자치구가 사회복지 예산이 높은 70% 이상인,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연초에 경로당 지원 예산을 세워서 2월 달에 세우면 2월 안에 소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생활개선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전문위원님도 여기 했었던 것처럼 경로당 생활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목록으로 따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지 지자체가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는 복지사업을 전체 하고 있고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가 전체 비용을 대는 거는 한 15%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 국가가 계속 복지사업을 늘리지만 그 모든 부담은 지자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도 일정 정도 조금 숨통은 트이게 하고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만 정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나 이런 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복지 비용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웅 위원** 차관님, 여기 서류에 보니까 당초에 일부 수용해서 37조의4제1항·2항은 수용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것은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저희가……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서류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7조의4제1항과 2항은 수용, 나머지는 수용 곤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랑 대화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돼 왔겠지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모르시는 건지 이 서류를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부처 의

견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일부수용(37조의4제1항과 2항은 수용), 나머지는 수용 곤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관계없이 전체가 신중검토라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당초랑 바뀌어진 이유.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입장을 바꾼 적은 없어서…… 아마 소통에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소통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산처가 부정적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내가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이거는 기재부 소관 법령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산처 소관 법령입니다.

○김기웅 위원 이게 지방이양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뭔가가 자꾸 걸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관련되는 걸 하는 거를 싫은 거지요, 기본적으로. 이건 지방이양사업인데 손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련된 법률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셔 가지고 지금 입장이 저희가 신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대통령령이잖아요. 이거 고치고 안 고치고는 기본적으로 예산 당국이 제일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안 고치면 여기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법령을 보시면 1·2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근거가 돼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람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내일이라도 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돼서 령을 바꿔서 일부 국가가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지금 고칠 수도 있는 내용을 갖고 법률 심의하는데 예산처에서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 포함된다고 한다는데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가가 할지 안 할지는 령 개정애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차관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저는 여기서 개정 2개는 하고요. 법사위 가서 기재부 나와서 안 된다고 뭐라 하면 그때, 제가 그 얘기 안 합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요. 자기들이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고치든 안 고치든 정부에서 알아 하시고 제 얘기는 복지위에서는 이런 내용은 듣고 가고 싶다는 거야. 특별히 큰일 날 문제가 아니라면 이걸 듣고 가도 된다, 내가 볼 때는. 근거 설정하는 건데 굳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대통령령을 고쳐서 하시든지 정부에서 뜻대로 하시고, 이런 근거를 여기

법률에 명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반대하실 이유가 별로, 정부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데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그러면 37조의4제1항·2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것만 반영해서 개정하는 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박용갑 위원**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경로당 승강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노인복지법 개정안인데 그것은 다음 소위에 상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했는데 제 법안은 사실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 꼭 상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영석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간사 협의해서……

○**박용갑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급식 도우미 말씀드렸었는데 차관님, 급식 도우미는 우리가 흔히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그런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장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보조인 선임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절차가 검사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의 조력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해지므로 형사사법절차에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 백종현 노인복지법 핵심 목적 중 하나가 학대받은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 백종현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자체가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7월 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형사사법절차를 대폭 바꿔 놓으니 기존 노인복지법에 피해 노인 절차와 맞지 않게 됐고, 10월 2일 시행에 맞추느라 개별 복지법까지 연쇄적으로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직접수사는 없애면서 제245조13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새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학대피해노인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검사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제2차 피해입니다. 더구나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증거도 대응 절차를 위해 학대피해노인이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연쇄 개정 자체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편의 비용을 학대피해노인이 치르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개정안의 원안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운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최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운 위원 이번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태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검사가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질적인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 반쪽짜리 형사사법체계의 법조문만 끼워 맞추는 탁상행정식 개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웅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게 있지요? 이 법이 여기에 속할 법인지 다른 곳에서 손을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건 노인복지법에 들어오고 아동에 대한 건 아동보호 복지에 들어가고 장애인에 대한 건 장애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돼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좀 장애가…… 이걸 해서 형사소송법체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력할 것인가를 죽 담아 놓는 게 법체계상 정합성이 있지 노인 문제는 노인복지법에서 따르고 노인이 그러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복지법에서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경로당 할 때 그건 공기질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법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에서 좀 더 정확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게 복지부차관님, 이걸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노인복지법에 왜 규정이 돼야 돼요? 난 우

선 그게 궁금해.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시네.

형사소송 돼서 만약에 가서 검찰 조사받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일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노인 복지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체계상 이상하지 않아요, 법체계상?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 법에서 수사기관이 확대받는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어디 가서 길을 걸어 가지거나 해서 경찰서에 가실 때는이든지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다 복지 차원에서 규정을 하나, 법체계상 형사소송법에서 해야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동은 어떻게 해? 아동이 그러면 조사 받을 때는 아동복지법에 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저희가 아동이나 노인같이 수사받을 때 보조인 선임 등의 복지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저희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장애인도요? 모든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당사자가 속한 관련된 법에서 수사 조력권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법체계상.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그건 아닐 거 같은데…… 그게 차관님이 보시기에 소송법, 형사 관련된 경찰 관련 수사나 그런 곳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이런 경우, 이런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할 수 있다…… 이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은 매 경우마다 관련된 법에 가 가지고 이 조문을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아까 공기질도 그렇다면서요. 전체 공기질을 관장하는 곳에서 다뤄야지 따로따로 대상에서 다루면 정합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개정할 내용이 이 법에서 이걸 개정하는 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냥.

○소위원장 백종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동 법안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날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부수 법안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크게 형사소송법 개정애 따른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다시 한번 질의……

○소위원장 백종헌 최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운 위원 지금 충분한 시물레이션과 치밀한 대안이 없이 정치적 목적에 밀려서 10월 2일 시행을 못 박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실무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 법안이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남용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대수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복원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별로 연계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인 정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졸속 조직 개편이 되지 않도록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이미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법이 바뀌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그 법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노인도 그중에 한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10월 2일 날 시행되지 않습니까? 비단 노인학대 피해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운 위원 한 번 더 바라봤으면……

○소위원장 백종현 최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운 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약자나 민생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나 부실수사에 대해서 피의자의 구제 받을 길이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인 아동·노인학대 또 의료과실 등 세심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오늘 소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꾸 그거를,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백종현 마지막으로 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 위원** 그러니까 최보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중수처법, 공수청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법이 연계돼서 처리돼야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지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남기시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제출·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기초연금법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편의를 증진하려는 타당한 취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 페이지에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공통된 내용 이외에도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심사 자료 중 거주기간 요건 관련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 하단입니다.

각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19세 이후에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반 노인과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각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요건으로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호영 의원안·안상훈 의원안·한지아 의원안은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타당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기초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인데 다만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청의 의견이 있는데 사할린 이주동포처럼 역사적 이주 배경에서 국내 거주 불가피하게 곤란했던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 거주기간 적용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갑 위원 차관님, 혹시 역사적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사할린 이주 동포 같은 경우는 복수국적자이지만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주가 됐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재외동포청 요청입니다.

○박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게 다, 그것도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할린동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아는 부분들에서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 케이스들을 다 고려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 의견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동기가 된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왜 이 법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법에 잘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는 나는 해외 재산 부분 쪽을 좀 보고 있는데 5년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복지부에서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도 5년은 좋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과세정보 이런 얘기가 있고 국세청 의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맞지요? 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령에 다른 걸 다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번 이 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우리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 주는 것 그리고 상향 입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도 정리하고 가는 게 나쁜 건 없다. ‘굳이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법이 복지위에서 됐는데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해외에 있는 재산도 법에 명확하게 조사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좀 만족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 얘기는 안 하고 대통령령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물론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령에 있으니까 빠자’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는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뭔가 부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법에 명시하고 가자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저는 오늘 백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른 안과 다시 했는데 오늘 그 논의만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어쨌든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나라들이 몇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10년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이 이야기를 외국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세 기반 연금을 지급할 때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요. 즉 불러 드리면 그리스 15년, 노르웨이 5년, 뉴질랜드 10년, 덴마크 3년, 스웨덴 3년, 아이슬란드 3년, 칠레 20년, 캐나다 10년, 콜롬비아 10년……

○전진숙 위원 마이크를 조금 잡아당겨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최소 3년에서 5년, 10년, 15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동의가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손호준 연금정책관 손호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3년이 많고요. 또 10년, 20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4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거주 요건 규정을 하면서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해외 사례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5년이라는 결로 하였습니다.

○전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기초연금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100%로 운영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일단 조세 100%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몇 개 국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조세 100%로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3년부터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옆에 계시는 위원님께서서는 20년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리고 왜 5년인지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주 요건의 규정을 낮은 연도 이라면 5년이 상대적으로 3년~20년 중에 낮은 연도이지 않습니까, 거주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결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5년으로 시작하다가 10년으로, 5년으로, 3년으로, 이런 부분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낮은 연도로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청에서 의견을 준 것 중에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재외동포청에 있는 것은 거주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장기거주가 곤란하였던 객관적 사유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할린동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복지부가 적절한 자료를 여기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인데, 이라면 우리가 지금 국내 거주요건 5년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할린동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의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사할린에 계속

있는 경우에 한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거주요건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저희가 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발의해 주신 법안에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5년을 하고 있는 사례는 외국 같은 경우 노르웨이 그리고 몇 개 국가가 더 있는데……

○**백선희 위원** 조세 100% 기초연금을 실시하는 국가가 몇 개 국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손호준** 한국 포함해서 13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제한된 국가지요, 13개 국가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할린동포 중에서 국내 거주 사할린동포인지 아니면 해외 거주인 동포까지 포함하는 건지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청이랑 더 협의를 하고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답변 누가 하실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손호준** 연금정책관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할린동포 부분은 재외동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저희가 재외동포청 의견에 따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에서 그러한 의견을 준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낮은 거주기간이라고 하면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바로 들어왔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장 10년의 거주기간을 바로 두는 것에 비해서 3년이나 5년이나 이런 거주기간을 두는 것은 짧게 거주기간을 하고도 현행 대비해서 변화가 크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할린동포 부분은, 어쨌든 저희 기초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장 박나연** 기초연금과장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셔야만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할린동포라 하시더라도 국내에 들어오실 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선희 위원** 저는 복지부가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은 몇 명이 대상이 될지, 향후에 어떻게 확대될지 재정 추계 같은 것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아까 5년으로 제안을 해서 5년이라고…… 저는 어떤 연도를, 3년이다 5년이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안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보면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5년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복지부가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웅 위원 우선 재외동포 부분은 제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사할린동포만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요. 법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원튼 원치 않은 피해서 온 피난민도 있고, 우리 동포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사할린동포만 특정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사자들과 관련된 부처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 달라고 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재외동포청에서.

두 번째는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참고하셨을 거 같아요. 3년, 5년, 10년씩 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적 관심도 크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저희가 처음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구의 나라들은 세금 자체를 한 40%까지 거두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세금 부과 자체의 율이 너무 다르고 복지 수준도 사실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몇 %로 받고 부과하는 비율이라든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그 나라의 현재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재 1인당 GDP 등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국가의 국격으로 보나 등등 했을 때 적절한 것 같습니다’라는 안을 복지부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지. 의원님들 안만 보고 오니까 다른 나라 사례 보고 3년, 5년, 10년 하는데 그냥 그중에 5년 정도가 적당한 거 같아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자료가 이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재부라든가 혹은 재외동포청, 외교부든 법무부든 간에, 국세청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시고 기준을 마련하셔서 저희 복지위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복지부가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서 그냥 토론해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시되……

차관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5년, 7년, 10년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3년 정도를 하고 있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최소한 3년은 너무 짧은 거 같고 일단 5년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5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저희를 설득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법안에서 5년이니까 5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늘 통과하기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법의 거주요건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5년은 국내에서 귀화를 신청한 사람의 귀화요건으로 지금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좀 되지요.

○소위원장 백종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종헌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이 정책에 긴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관님도 알고 계실 거고, 조문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복지부 수정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제시한 거는 최소한의 거주요건만 5년, 7년, 10년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지부는 뒤에 역사적 이주 배경 등등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할린동포와 관련돼서 해 주셨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것도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사할린동포에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시급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급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부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시급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법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가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방금 심사한 4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거주지 요건 관련 내용만을 포함하는 제10항만 대안 반영 폐기하고 나머지 법률안은 그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죄송합니다. 관련 발언……

○소위원장 백종헌 의결 전에 최보윤 위원님.

○최보윤 위원 저는 거주기간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발언 남기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거는 오늘 논의를 안 하는 걸로 아까 동의……

○소위원장 백종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보윤 위원 예.

○소위원장 백종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현행법 제1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가입 이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외국인 가입자 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외국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급여의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 등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려는 대상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상호주의나 그 밖의 예외 사유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이하므로 각론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규율 대상입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각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관한 외국인 가입자 등의 적용관계를 규율하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만희·김교홍 의원안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반환일시금에 관한 사항은 이달희 의원안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관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등의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중단입니다.

상호주의 등 예외 허용 여부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외국인 가입자 등에 대해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4건의 개정안은 상호주의와 그 밖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상응하는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연금보험료 추납 기간입니다.

취약계층의 가입이력 상실분 보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의 본질과 내국인·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가입자 등이 추납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행일입니다.

각 개정안은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등이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 추후 납

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소지와 법적 안정성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적용례와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후에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김미애 의원안·이달희 의원안을 참고하여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김교홍 의원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속 지급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수급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제도개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율 대상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대상을 외국인 추납과 그다음에 부양가족연금까지 하는 것에 동의하고 반환일시금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호주의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적용만으로 지금 전체 외국인 추납 대상의 96%,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같은 경우 추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적용 제외됩니다. 그래서 96%가 상호주의 적용만으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호주의 적용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연금보험료 별도의 추납 기간은 상호주의 적용만으로 이미 96%가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납 기간 규정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행일과 경과조치인데요.

이 법 시행에 일정 기간을 두게 될 경우 그사이에 외국인 추납이 몰릴 것을 우려하여 즉시 시행을 하되, 다만 저희가 김교홍 의원님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을 하되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납세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같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예외를 뒀서 시행령에서 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 시행령 시기…… 상호주의를 즉시 시행을 하되 다만 김교홍 의원님안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김교홍 의원님안은 일률적인 상호주의 적용보다는 외국인 중에 우리 국민의 배우자 같은 경우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사이와 관련된 경과규정 조문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차관님,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실태? 지금 추납 막 하겠다고 몰려오고 법개정 전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까? 많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추납이 최근 급속히 증가했고요. 외국인 추납은 하루 평균 5에서 15명 사이로 급속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즉시 시행을 안 하면 갑자기 무슨 혼

란이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상호주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김기웅 위원** 96%가 빠지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96%가 빠지고 그러면 그사이에 경과규정을 시간을 두면 상호주의가 본국에서 추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국가인 경우—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그사이에 신청하려고 할 거고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개정 조문 자체는 즉시 시행이 필요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걸 법을 했는데 하고 나서 다들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이 6개월 뒤에 상호주의를 자기들도 만들었어, 그 나라가 이걸 고쳤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국가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국가에서 이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상호주의를 그러면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까? 인정해 주는 건가요? 한 번 안 해 주면 계속 안 해 주는 거냐, 96%는 그냥 가는 거냐. 아니면 중국인 70%가 중국 내에서 어떤 제도 변화가 있으면 다시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그걸 여쭙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것은 후자입니다.

○**김기웅 위원**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김기웅 위원** 그럼 그것도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제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아까 ‘예외 일부수용’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상호주의의 예외 일부 수용하고 설명이 되게 어려워서…… 그럼 예외 수용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어서 그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96%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게 96%가 대상이 안 되는데 여기 예외라는 게 96% 중에서 일부를 구체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설명을 쉽게 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장기간 거류하고 또 보험료 납부 기간도 일정 이상이 되는 대상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서 여기는 5년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국내 거주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국내에 오래 거주했다는 게 어떤 정도를?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시는 국내 거주 15년, 보험료 납부 5년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민연금의 사회보장협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가 몇 개국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손호준** 현재 42개국 체결돼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42개국 그러니까 이 숫자는 바뀔 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우리가 사회보

장협정을 체결하면, 그래서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상대국에 추납제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즉시 시행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김교홍 의원님께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정착돼 가지고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운 위원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최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운 위원 국민연금 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납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안에는 예외 허용 권한이 복지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물론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는 하지만 해당 권한을 복지부에 부여했을 경우에 또 자의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해당 사항을 매월 확인을 하는 등 행정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에 포함된 예외 허용 권한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올려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배우자 같은 구체적인 체류 자격, 그다음에 거주 기간 그리고 보험료 납부 조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지금 규율하시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도의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영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그 부분 다시 또 의견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 제도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귀화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외국 국적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또 국적을 취득한 후에 연금을 취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굳이 예외를 두기보다는 또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으로 가치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으로 들어와서 귀속감을 높이는 방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사안마다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부가 정부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걸 조금 전체 나눠 주시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세요, 먼저.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금 시간을 주시면 드릴……

○전진숙 위원 준비 안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준비되어 있는데 배포를……

○전진숙 위원 복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김기웅 위원 말로 그냥 하세요, 간단히 요지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주의를 적용을 하고 다만 일부, 장기 거주하고 보험료 납부 그다음에 체류 자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대령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즉시 시행을 하되 아까 대령으로 위임해 주신 부분을 만들기 위한 6개월이 필요해서 그사이에 신청하신 분들과 관련된 적용례를 부칙으로 별도로 경과규정을 만드는 안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럼 질문 하나 드릴 건데 그렇게 아까 상호주의 플러스 예외로 했을 때 총 몇 프로가 빠져요? 지금 96%가 원래 상호주의에서 빠지잖아요. 예외 집어넣으면 몇 프로가 빠집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대략 10%가 덜 빠져서 86% 정도가 빠집니다.

○김기웅 위원 86%가 대상이 제외될 거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답변으로 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건의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과 관련된 공통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크레딧 관련 사항만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 중 해당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병역의무 수행기간’ 또는 ‘18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5건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복무를 마친 날’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때’로 앞당기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군복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가입 이력을 쌓지 못한 기간을 보충하여 군복무가 노후소득 보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과 산입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론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산입 기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백선희 의원안은 그 상한을 '18개월'로, 위성곤·한지아 의원안과 나머지 7개의 개정안은 그 상한을 없애면서 병역의무 수행 기간과 군복무 기간이 산입되도록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최저 복무 요건(6개월) 삭제 여부입니다.

현행법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건의 개정안은 최저 복무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군복무크레딧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건의 개정안은 각각 그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 등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앞당겨지면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 세대가 부담하게 되므로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그 효능감이 단기에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간 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적용례입니다.

각 개정안에서는 서로 다르게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9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복무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보장성이 강화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안 18조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산입 기간은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저 복무 요건 6개월을 삭제하고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미만 근무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동의합니다.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복무를 마친 날로 할 경우에 당장의 재정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점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적용하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저도 갔다 왔고 저희 애들도 갔다 왔고 지금 막내는 아직도 군에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당초에 궁금한 게 왜 이거를 12개월로 상한을 제한한 취지는 뭔가요, 원래 입법에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일단. 이게 전체 기간을 산입해 주지 않고 12개월로 상한을 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군 복무 기간 다 해 주면 좋은 건데 굳이 12개월로 상한을 정해서 입법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이유가? 그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거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손호준** 연금정책관 여기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이 시작된 게 2008년 정도였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6개월만 이렇게 가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12개월로 작년엔 그 법을 개정하면서 가입 기간을 늘렸던 것이고 상한을 뒀다는 게 결국은 그만큼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6개월, 12개월 이렇게 늘려 왔던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때에 비해서 재정이 좋아졌어요? 잘해주는 건 좋은 애긴데 다 잘해 주고 싶지요, 다 마음은 똑같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재정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넉넉해졌냐라고 여쭙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군복무크레딧은 100%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웅 위원** 글썄, 알겠는데 재정이 그때 상황과 지금이, 이걸 기간을 전체를 인정해 줄 정도로 뭔가 재정 상황이 좋아졌냐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그때 했던 입법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꾸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 돈으로 인심 쓰는 건 좋지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때는 못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도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싶었겠지, 풀로 해 주고 싶었겠지. 그런데 못 했을 때는 뭔가 우리 지금은 모르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복지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된다고 하시니 내 말은 뭐가 바뀐 거냐 이거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이제 청년층이 사회에 내딛는 기간,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고 그럴수록 노후에 충분한 소득 보장이 되지 못하는데요. 청년들과 그다음에 군대로 인한 부분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부분으로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서 더 두텁게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거야 항상 두텁게 보장하면 좋은 거지. 다 하면 좋은 거지요, 그거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예전에 그러면 그렇게는 왜 좋은 걸 안 했냐고 여쭙보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해 줘야 저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전진숙 위원** 현직 차관이니까 답변을 못 하지. 옛날 차관을 불러다 물어보세요.

○**김기웅 위원** 그것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과. 왜 이렇게 했는지 취지라든지 뒤에 6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것도 원래 제한을 뒀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삭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땐 왜 그걸 뒀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때 6개월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사회에 첫 발을 디딤는 시점이 자꾸 지연되면서 조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김기웅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군대 몇 살에 가는지 보시면요, 우리 애는 늦게 갔지만 요즘 군대 가는 기간이 옛날보다 훨씬 당겨졌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막 스물일곱에 갔는데 지금은 거의 대학교 2학년 때 다 가거든요. 19살 때 실제로 대부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사회에 내딛는 거는 훨씬 늦어지지 않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의가, 지금 설명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이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해 주자는 말 외에는 전혀 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김윤 위원** 복지부가 재정 당국을 성공적으로 설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백종현**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차관님,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국가가 생긴 이래로 국가의 재정은 늘 부족합니다. 한 번도 풍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놓을 건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쩌면 이렇게 오늘 법안 자체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청년이 자칫 차별, 현재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물론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전보험료 지원 방식에 대해서 계속 예산처가 재정적인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현재 세대에 대해 부담을 안고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에게 그것을 그냥 넘길 것인가의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복지부 의견에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전보험료 지원 방식이 국가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또다시 그 불안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너희들이 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사전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있고요 출산도 포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본인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청년들이, 그나마 우리가 모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군대에 관련해서, 군대를 가야 되고 짧게는 18개월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21개월까지 본인들이 배운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자기 인생에서 그냥 국가에 바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복지부 의견 중에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고 아까 사전보험료 지급 방식을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자녀를 얻은 날 등으로 앞당기거나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출산크레딧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 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서 출산·양육이 노후소득 보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각 개정안은 산입 시점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론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산입 기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서 각 12개월을,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자녀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첫째와 둘째를 각각 24개월, 18개월로 확대하고 김남희 의원안은 21개월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27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서영석 의원안은 둘째 자녀에 대하여 15개월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입 시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에서는 산입 시점을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앞당겨지면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 세대가 부담하게 되므로 형평성이 제고되고 그 효능감이 단기에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군복무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국가의 비용 부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선민·남인순·김남희·의원안은 국가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출산크레딧 관련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간의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부담률 3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례입니다.

각 개정안의 부칙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간의 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고려하여 안 19조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산입 기간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녀와 관련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인정하는 것 제도 자체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을 해서 들

제 자녀부터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자녀부터 15개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산입 시점을 현 출산한 시점으로 당기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별 비용 부담을 30%에서 100%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당국과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입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종전 3급 단일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약 49만 명인데 약 88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을 가정해서 이들에게 기초급여의 50%, 부가급여의 75%를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27년 예산안에 199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상의 장애 정도 구분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액 산정이나 예산 확보 및 집행체계 정비 등에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 하위법령 체계를 맞춰서 서미화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을 반영하되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6조 3항에 금년 예산 편성 내용을 반영해서 기존 중증장애인과 3급 단일 장애인 간 기초급여 차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부칙입니다.

중전 3급 단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서 27년 소요예산 6개월분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까지 확대하려는 개정법령안에 동의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수정 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은호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신청 간주 등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신청 간주 등 전반적인 장애인연금의 지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병훈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모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경우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그 외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발굴 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지급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신청주의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제도 이용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병훈 의원안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공무원에 의한 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까지 조사 생략 대상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의한 신청은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로서 그 자체만으로 수급요건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시점과 신청 간주 시점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의한 신청이나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경우에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의 적용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두 개정안은 모두 법 시행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신청 간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하여 이력관리 중인 사람은 시행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도 법 시행 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 시점부터 신청 간주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장애인연금 수급과 관련된 신청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 중에서 공무원에 의한 신청 시 재산과 소득과 관련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던 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의결하기에 앞서 정부 측에서 마련한 정부 대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외국인 추납 및 부양가족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을 하되 일부 체류자격, 거주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을 고려한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주시는 규정이고요. 시행은 즉시 하되 대통령령 위임에 필요한 적용례 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크레딧 관련해서는 군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인정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15개월, 그리고 각각 27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 둘째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장애인 보조인·진술조력인 제도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형사사법 절차

에서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호제도를 유지·보완하려는 취지로 장애인의 절차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추가하면서도 같은 항에 규정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이 실제 참여하는 절차는 현행과 같이 조사 과정이나 검증 또는 증인 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고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오전에 심의해 주셨던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고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차관님,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왜 장애인복지법까지 다시 손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급격하게 개정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보완수사 기능을 없애 놓으니 이제는 장애인복지법에까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는 절차를 새로 넣고 기존의 수사·재판 과정도 수사·공소·재판 과정으로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잘못된 형사소송법의 후유증을 개별법 개정으로 메우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개정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서 장애인이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의 선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반복진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자가 바뀌고 질문 방식이 달라질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보완수사를 막아 놓고 피해자를 다시 만나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구조가 과연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의 무리한 개정으로 발생한 제도적 혼란과 절차적 부담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피해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개정안의 원안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운 위원 지금 법안이 장애인 학대조사 시 보조인 선임 및 진술조력인 참여 과정에서 수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공소 과정을 끼워 넣었으

나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한 수사지휘 부실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부족하여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만 늘린다고 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가……

○김교흥 위원 됐어요.

○소위원장 백종헌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의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레딧 관련 개정안 중에서는 해당 내용만을 반영한 8개 법률안은 대안 반영 폐기하고 나머지 법률안은 그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크레딧 관련된 발언을 제가 못 한 게 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종헌 예, 말씀하십시오.

○최보윤 위원 크레딧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산입 시점을 둘러싸고 시점을 앞당겨 필요한 재정을 현재 세대가 책임지는 것은 세대 간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처럼 연금 수급 시점까지 부담을 미루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잘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 백종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 제20항, 제21항, 제23항부터 28항까지 이상 1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19분)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으로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8)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9)

(14시20분)

○소위원장 백종현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부 입장으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가 수사 초기부터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법은 김기웅 위원님께서 오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서도 적용하고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호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발달장애인의 절차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차관님,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고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아니면 잘못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다른 법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개정된 형소법 체계 안에서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이 절차대로면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추후 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전담수사관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후에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 기록이 부족하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까지 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절차가 명확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 사람을 두고 기관과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이 개정조문은 이미 시행이 되는 형소법 체계 안에서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특히 발달장애인은 질문 방식과 조사 환경, 조사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진술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전문교육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는 막아 놓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잘못 설계된 형사소송법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전담조사 체계까지 다시 뜯어고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진술과 사건 지연의 부담은 발달장애인이 떠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후유증을 발달장애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원안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운 위원** 저도 말씀……

○**소위원장 백종헌** 최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운 위원** 본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맞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에 지방공소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책무를 신설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보호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소통 방법과 또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 또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의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 또 조사 기능마저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3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지아 의원은 이에 더해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 지원의 계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건의 개정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고 부칙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경과조치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에 수용이구요. 전문위원실 수정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윤 위원 저희가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긴급돌봄서비스와 제공기관인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증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다 하늘로 간 피터팬 아빠와 관련돼서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잘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셨지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시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4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네 분의 개정안을 저희가 통합 정리해서 검토의견 요약으로 표를 만들어서 배치했습니다.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덟 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고 세부내용은 각각 옆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공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실태조사 항목 추가 등입니다. 실태조사 항목과 기본계획 포함 항목

에 인력 수급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사항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입니다. 국가·지자체의 근로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장기요양요원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례관리회의와 지역사례관리회의 그리고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공단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문과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표로 예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남인순·조은희·조지연·전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기요양법 개정안은 각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각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집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 후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여기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의돼 왔던 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해서 다음번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깐 일단은 반가운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인구고령화 그리고 돌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봄 문제의 핵심적인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인데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을 하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돌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김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장기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복지부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도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속히 검토해서 전문위원실이랑 상의

해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해를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고 받는 임금은 워낙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집중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다음번 대안 때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엽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2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입니다.

양 개정안은 병원선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병원선을 보건소 등과 동일하게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선 운영의 안정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경우에 현행법 제16조·17조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인력,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의료원의 경우 시군구가 소관하는 관할 범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이나 병원선의 경우에는 관할 범위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진료한다는 점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데 체계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병원선을 지역의료기관에 포함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박을 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기 어려운 점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비해서 병원선의 시설, 기능, 인력과 행정체계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은 병원선을 별도의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보건소 등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이동형 진료시설, 선박이나 차량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 위원님.

○김운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법 개정안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법 개정안과 다른 형태의 정부안을 준비해서 취지를 달성하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법 개정보다는 저희들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동형 선박과 이동형 차량 등으로 해서 진료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지정받고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해야 됩니다.

○김운 위원 법적 근거는 마련해야 되냐?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운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정부안을 다음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병원선은 뭘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저희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그간에는 지역보건법의 하위규정으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병원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비, 수리비 등을 국고 지원하고 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지역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료의 연속성 등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는 없고 그냥 관리 규정으로 운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훈령입니다. 말씀드린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은 훈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에 대해서 운영 주체와 임무·역할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도 하고 또 진료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진료했던 점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병원선 관리를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시도 지자체가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관련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저도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종헌 예,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차관님, 지금 현행 병원선은 무료로 하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되면 건강보험료 이런 걸 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본인 부담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교홍 위원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생깁니다.

○김교홍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차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 백종헌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하고요. 병원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지요?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백선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병원선 같은 경우에 광역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광역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지역보건의료체계로 들어오려면 이동형 선박과 차량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일반적으로 수요를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수준보다는 사실은 광역 단위로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수요 자체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선하고 이동형 선박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동형 선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병원선보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병원선과 이동형 선박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기존에 병원선에서 하던 거를 이동형 선박으로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저도 병원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지를 않아서 질문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요. 병원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 관련해서는 지금은 의원급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려면 섬 지역에 있는 도서민들도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택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선 내지는 이동형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돌봄서비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위가 적절할지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병원선하고 이동형 선박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돌봄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병원선은 저희가 이동형 선박이라고 했지만 병원선을 얘기합니다.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4군데가 있고 병원선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는 다 정박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박항이 있어 가지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통영, 웅진군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 전남광주 통합됐습니다마는 여수·목포항에 정박합니다. 그리고 충남에도 대천항에 정박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름 연계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진료실로, 연장된 진료실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지금 통돌이라든가 재택의료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지역에서 통합돌봄이나 관련되는 재택의료서비스는 이루어지는데 이걸 의사, 공보의들이 보통 승선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돌봄서비스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역시 선박형, 병원선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 관련해서 별도의 병원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니, 병원선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선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병원선이 그 기능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 위원 이게 섬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놓여준 지역의 1차 의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섬은 거기에서도 더 심각한 의료 문제를 겪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걸 좁게 병원선 문제만 다루시지 말고 전체 섬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섬 의료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안에서 병원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로 파악해 보았을 때 5개의 병원선이 진료하는 도서 수는 적게는 17개 도서부터 많게는 90개 도서까지 커버를 합니다. 만일 연륙교가 놓이고 그렇게 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데는 연결되지 않은 그런 섬에 대해서 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더 점검하고 파악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그게 섬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각도에서

는 우리가 통합돌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돌봄 문제를 어떻게 의료와 돌봄을 같이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거냐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1항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는 제42항과 제43항도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8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소위 심사경과부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건의 개정안은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소위에서 논의되었고 3월 소위에서는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응급의료의 거부 사유나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운영 그리고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은 얼마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개별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 수정……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따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윤 위원 정부 수정 대안이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수정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 대안 심사 참고자료 보고를 한다고 저는 일단……

○김윤 위원 수정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종헌 수정 대안을 배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배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요약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쪽, 얇은 자료에서 1쪽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황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전체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개정사항들이 있는 조항들을 일단 일람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총칙의 정의 규정에서……

○전진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좀 기다리겠습니다.

○김윤 위원 책이 2권인데 얇은 책 가지고서 설명……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얇은 책의 첫 쪽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 위원님들이 다들 두꺼운 책을 들고 계셔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대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료법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중의 정의 조항 2조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정의 중의 진료를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로 정의하고요. 최종진료, 응급의료진료권, 이송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3장의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는 6조 거부금지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금지하는데 그 주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제4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먼저 실태조사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이송체계, 진료체계, 이송실태에 관한 실태조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15조와 관련해서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 수용불가 사전고지 정보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확인하도록 해서 운영합니다.

제5장은 재정이고요.

제6장의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에서 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업무와 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의 제공·요청 등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26조·30조·31조의 응급의료기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그 각급 센터의 업무 내용에 중등중환자 중심, 경중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로 수정합니다.

그다음, 당직체계 32조입니다.

조문명을 비상진료체계에서 당직체계로 수정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당직체계 유지 등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및 근무기준 마련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의 규정에서 48조의2 이송체계에서 시·도지사는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 우선수용병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이송체계의 준수 의무를 갖도록 신설하고 그다음에 중증응급의료상황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그리고 119구급상황센터, 중등증과 관련해서는 119구상센터, 경증과 관련해서 119구급대 등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지정방식 적용을 규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상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9장 보칙 그리고 제10장의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63조 형의 감면 규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규정에서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은 전체 개요이고요.

저희가 배포해 드린 두터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개정안의 정부 대안입니다.

1쪽, 제1장 총칙 중에서 김운 의원님의 이송·전원은 있지만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요. 정의 조항에서 진료의 범위를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3쪽에 최종진료 정의를 담았고 최종진료에 대해서는 김운 의원안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정의 조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명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진료권에 관한 5의2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5의3호에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환자 평가, 관찰, 응급처치, 이송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 규정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전원 규정은 삭제하고요.

다음 조항들은 자구수정에 해당합니다.

다음, 9쪽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다음 10쪽에 있습니다. 10쪽의 현행 규정은 상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6조의 응급의료의 거부금지에 2항을 신설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로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4항입니다.

2항과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1호에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영 중인 경우 또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해서 가 목에 이미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목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 시간이 겹치는 경우 등을 규정 명시하였습니다.

통신·전력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쪽, 17쪽은 조문 정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17쪽의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은 조의 명칭을 응급환자의 다른의료기관 이송으로 조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기도 다 현행과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8개 개정안 중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괜찮고요.

다음, 21쪽입니다.

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조항의 4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4항을 신설합니다.

다음에 12조의2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 조항의 1항, 2항을 신설합니다. 특별히 이견이 있지는 않고요.

다음, 22쪽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제13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응급이송수단을 확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보호로 차구를 수정하고요.

다음, 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5쪽의 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6쪽 제13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조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27쪽, 6항의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에 3의2호로 응급의료진료권 지정의 적정성, 3의3호로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의 조정, 3의4 제26조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적정성, 3의5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제13조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조항 현행과 같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31쪽에 2항의 5의2호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적정성, 5의4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의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 규정은 현행 조항을 이렇게 반영하고 또 시행령의 규정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항의 실태조사의 내용에는—33쪽입니다—3항의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호 119 구조법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 3호 응급환자진료체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호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이고요. 현행과 같습니다.

35쪽 하단에 2의2호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를 신설하고 또 3호의 2항으로—36쪽 제일 오른쪽입니다—2항으로 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 구조법 10조의2에 따른 구상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고 해서 정보 실시간 확인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제15조2의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은 현행과 같습니다.

40쪽에 2항으로 신설한 조항은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명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46쪽, 제17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1항에서 저희들이 조항을 좀 정리해서 밑

줄 처진 부분과 같이 복지부장관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로 구체화하였습니다.

3항은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4항,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49쪽 5장 재정입니다.

재정에서 제21조 기금의 사용 중 2의2호로 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 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50쪽 오른쪽 하단 3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정할 시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두었습니다.

제24조 이송처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소방청장은 제외한다를 두었습니다.

다음, 하단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장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52쪽,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1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뒀고요.

다음, 관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하단에 9의2로 전문응급의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관한 지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역시 10의2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하단에 25조의2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상황실의 지정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입니다—56쪽입니다—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1호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그다음에 2호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 3호 그 외에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을 두었습니다.

3항으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뒀고요.

4항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광역상황실의 장은 이송 의료기관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장,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1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가용 현황,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을 제공하고, 2호 구급차 등을 운용

하는 자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5항을 신설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항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7항 국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항 중앙응급상황실의 장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업무 연계 상황에 필요하다면 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입니다.

이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또 1호에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를 한다고 말씀드린 중증도에 따른 분류 체계에 따랐습니다.

그다음, 62쪽 하단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두었습니다.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이고요. 역시 1항 1호에서 중증도 분류 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제31조 중앙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에서는 1호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그리고 2호에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조항을 두어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를 그냥 응급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3항에서 구급차 등은 넓혀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상센터, 구급차 등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한다는 것은 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4항은 명칭 권역을 중증으로 바꾸는 규정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은 현행과 같습니다.

31조의6은 신설하여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

차 등 운용자의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3항 장관은 교육을 위하여 응급의료 분야 전문성, 교육, 인력·시설 등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항 장관은 병원 전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74쪽입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호에서 교육 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5항은 신설하여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의 대상·내용·방법·면제 자격 그리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 조항의 명칭을 비상진료체계에서 당직체제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인력 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 의사를 두어야 한다.

3항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4항 중증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 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5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응급실 전담당직전문의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서 1호에서—78쪽입니다—당직전문의 등 2호에서 해당 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7항을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전문의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8항 장관은 당직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9항 그 밖에 당직체계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은 현행과 같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명칭을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80쪽, 제35조 조항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81쪽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입니다.

제44조에서 구급차 등의 운송자는 현행과 같고요.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역시 같습니다.

다음, 82쪽 하단 제46조 구급차 등의 기준도 현행과 같고—다음 쪽입니다—46조의3 응급의료 전용헬기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84쪽 제47조 구급차 등의 장비도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제일 하단 제48조의2 수용 능력 확인 등의 조항 명칭을 응급환자 이송 체계로 개정하고 이 부분에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86쪽, 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호 중증환자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 이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치에 관한 사항, 4호 구급차 등의 운송자가 응급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그리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그리고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그리고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5호에 담고 6호에서 그 밖의 시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88쪽 2항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은 중증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호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상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호 중증도 분류 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상의료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호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 등의 운송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3항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상센터 구급차 등의 운송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4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5항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고지받은 내용을 119구상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항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상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지역이송체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수용하여야 한다.

7항 응급의료기관은 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8항, 1항부터 7항까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방법·분석·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제48조 3 응급의료 전용회선 등의 운영에서는 밑줄 친 부분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로 명확하게 하고 괄호에 ‘응급차 등 운전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를 말한다’고 되었습니다.

다음, 94쪽 정부대안 이미 15조 2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지도의사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100쪽 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도 현행과 같고 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 의무)도 현행과 같습니다.

101쪽 제9장 보칙입니다.

보칙은 55조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59조 역시 의사 명칭 사용 금지에서 ‘권역의료센터’를 ‘중증의료센터’로 자구를 맞추었습니다.

다음 103쪽 제10장 벌칙입니다.

104쪽인데요, 제60조 벌칙 중 3항 1호에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넓혔습니다. 제62조 과태료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06쪽 제63조는 응급처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은 자구를 수정하여 ‘제공하는’을 ‘제공한’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3항을 신설하여 제48조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중증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중증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가 불가피하였으며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로 두었습니다.

마지막, 부칙입니다.

110쪽에서, 다른 조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다만 32조 당직체계 3항·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규정한다라고 하여 김윤 의원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제2조는 중증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이고요. 제3조는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두었습니다. 제3조 벌칙도 역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그렇게 정부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정부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한 쪽짜리 응급의료법 개정안 정부대안 수정사항입니다. 이거는 소방청과 협의하여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응급의료법 제3조의6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방청은 31조의6 1항에서 단서로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요.

또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부칙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송’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는 부칙 추가 요청을 해서 협의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운 위원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최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운 위원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이 잘 논의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응급의료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방안들을 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 위원 이 법이 기존법과 크게 다른 것은, 이전 법은 중앙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전국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법은 중앙정부가 원칙을 정하되 그 원칙을 탄력적으로 시도가 자체적인 계획과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짜서 지역 맞춤형의 응급의료체계, 응급환자이송체계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게 현재 응급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도가 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말 잘 계획을 만들고 지역의료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그게 실제로 계획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이 법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고 강력해야 이 법이 시도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이 법이 취지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응급환자이송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텐데 복지부 어떤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시도가 이 법에 따라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책임지도록 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번 응급의료 개정법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일찍이 지역·필수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필수의료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분만, 심뇌혈관 이런 중증질환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 중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종래하고는 다르게 시도에서, 지역에서 지역별 이송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협력체계를 잘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시도별 자원은 광역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도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극3특이라고 부르는 권역단위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시

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이라고 하면 경북은 또 의료자원이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대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대구와 경북시도로 보기보다는 좀 더 넓게 대구경북 권역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송체계를 수립해서 응급환자를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력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윤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사실 지금 응급의료기금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그 두 가지 수단 말고는 시도를 복지부가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에 정책 가산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데 정책 가산에 대해서 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도가 세운 계획, 시도가 응급의료체계를 운용한 결과를 나중에 시도에 배분하는 재정에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시도가 차등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배분된 결과를 ‘정말 내가 잘해야 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이를 느끼도록 재정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금도 지금처럼 복지부가 그냥 수직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시도 응급의료계획에 기반해서 그걸 평가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이 짜여져 있고 시도가 지역필수의료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도 큰 틀에서 시도필수의료계획에 따른 재정배분 방식을 따라가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복지부가 가진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13페이지에 보면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4항의 2호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추락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그렇고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역시 학생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그렇고 병원들이 모두 다 그 응급환자를 수용 거부한 이유가 ‘그 환자에 대한 최종치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수용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윤 위원** 물론 병원들이 그 최종치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 그 환자들의 최종진단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종치료는 그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의 진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가 의학적으로 확정된 최종치료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급대원 전화받고 ‘소아신경과 없으니까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닌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게 15조 2항인데요. 2항 3호에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황센터나 구급상황센터가…… 대구를 예로 들면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가톨릭의대가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가요? 하여튼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무슨 진료를 할 수 있는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경북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어

떤 진료 범위를 갖고 있고 영남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어떤 진료 범위를 갖고 있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구급대원들이 특정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상황센터에 문의했을 때 개별 병원을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이 아니고 ‘개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역의료체계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병원이 어떤……

○김윤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오늘 체계적인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어제 저희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받고 가장 관련된 것이 소방청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방청의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책자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잘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의로 준비한 것도 여기 응급의료법 제31조의6에 있는 119 구급대원이 이미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송과 전원의 관계 때문에 소방청에서 살짝 불편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별지로 준 것에 제대로 수정이 된 것 같아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수용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족수가 될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종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종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

보시스템 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자료 수집 및 기관 간 정보 요청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한지아 의원안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데 있어 자료의 종류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종태 의원안과 백종현 의원안의 경우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백종현 의원안의 경우 특정 사업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이 개편되거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법률 개정의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및 발표 금지 의무의 경우 현행 71조 및 85조 제6호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의견을 작성하였고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 백종현 특히 복지부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수용 의견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 통과 이후 정보시스템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가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4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2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이랑 2번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정의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과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입니다.

개정안은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살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면책 조항은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총칙보다는 주로 보칙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부칙에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자살 구조 행위 중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5페이지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수정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종사자 지원 조항에 대해서 소진률이 높다, 예방 종사자의 소진이 높다는 점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선의의 구조 행위 면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방·구조 활동을 위한 면책 조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다음 3번, 심리부검 자료 요청과 4번, 응급의료기관과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연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먼저 김윤 의원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소병훈 의원안의 경우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가 보다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심리적 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김윤 의원안의 경우 자료 요청 대상 기관을 교육 관련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자료 요청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성인 심리부검과의 중복 및 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살자로 조정하였고 자료 요청 대상에 청소년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연계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제공하거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보유하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하여 국적이나 자살 발생 시각, 장소, 자살 시도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고 정보의 연계까지 이루어져 자살예방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정보의 삭제 및 파기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자살시도자 등에게 삭제 및 파기요구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를 보시면 원래 개정안에 자살사건 발생 시각으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는 신고접수 시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자살사건 발생 시각 확인이 어렵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하나……

○소위원장 백종현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19세 미만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자료 요청 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밑에 소병훈 의원안에 청소년 심리부검을 위하여 요청되는 자료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디지털 유산이 청소년 자살자의 심리부검에 매우 유용한 기재 중의 하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조문으로는 포괄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인정보 문제가 해소가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자살예방정책 연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 등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결합 및 결합된 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이나 통계 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사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비 및 지방비 또는 국비 전액으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 운영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정책적인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아직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별도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그리고 일곱 번째, 정보 연계 및 자살예방 수행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은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요. 백선희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2페이지의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는 다만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별도 센터를 추가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한가 좀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같이 질문을 할까요? 저도 똑같은 내용이어서.

○소위원장 백종현 예, 그렇게 백선희 위원님이 양해 되시면 전진숙 위원님……

○백선희 위원 한마디만 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면, 제가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유사한 경우가 있거든요, 트라우마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종사자 지원센터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쪽하고 정신보건을 조금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지금 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살 예방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자살 예방 상담을 하시는 예방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도 말씀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도 작년 국감 때 자살과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살예방사업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이를테면 그들이 기본 상담을 하고 나면 본인들도 지금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종사자 관련된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의 요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자살예방 종사자는 자살예방센터에 한 2400여 명 그리고 생명존중희망재단에 한 150여 명 정도가 근무해서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살예방 종사자의 소위 소진도, 번아웃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도 높지만 자살예방센터가 87.5% 정도의 인력 소진 수준을 응답하고 있고요.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57%, 광역정신건강센터가 50%, 이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27년 정부안으로 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좀 상의해서 적어도 소진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이 보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를테면 방금 소진이 워낙 심하다고 그렸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과 이것을 꼭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소진이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그 외에 사실은 내담자가 강제입원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살 현장을 목격하고 나면 외상 후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같이 접수하고 지원하는 행동 그리고 법률노무 컨설팅 또 심리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정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 구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재단 안에 부서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심리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소진 예방 공모사업을 시도별로 실시하면서 시도에서 실시하는……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계속 답변 주시는데.

지원금을 마련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취급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 한 5억 400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노무 컨설팅 그리고 심리상담비 그다음에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공모사업으로 17개 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지원비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심리 상담에 관련된 자료를?

○전진숙 위원 현재 진행해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7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지원센터까지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예.

○소위원장 백종현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자살예방센터가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고 또 자살예방팀으로 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청내나 시에 둔 데도 있고 대개 보건소에 또 많이 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은 제가 보기에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역에 착근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행안부하고 협조 체계를 가져서 자살 예방을 제대로 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공에 떠서 그냥 중앙부처만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님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자살 사망자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지자체와의 연계성 그리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지금도 없애고 있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부·행안부·국방부·보건복지부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빨리 없애야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위낙 자살 예방 사업에 관심과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인력이나 또 지역에서의 인구 또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협조를 받을 것이고요. 행안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들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또 급여법을 개정해서 복지사업 평가항목에 자살 예방 사업을 담으려는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예방 사업은 사실 우리 부 자살예방정책과나 정신건강정책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범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정부 자살예방생명지킴본부들 지금 운영하고 거기에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는 자살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또 이렇게 예방 사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적인 자살 예방 대책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지금 이 법대로라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살 시도자들이나 이런 자살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인데 실제로 자살자의 가족 이런 경우도 트라우마가 꽤 많은 텐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 법에서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할 때는 자살 시도자, 자살을 했지만 안 된 분들과 또 자살자의 유가족이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유가족들은 같이 자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그 자조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해 봤는데요. 그런 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산은 작게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내지는 그런 재정적·행정적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살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에서 얼른 벗어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2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관 소관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관 소관 중 아까 의결하지 못했던 응급의료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칙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었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예,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입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할 때 NEDIS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NEDIS라는 시스템과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MHIS라고 하는 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는 법률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촉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 과정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1년 후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위원님들 어떻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이 부분 정보 연계에 대한 사항은 정보 시스템 연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6개월로 단기간에 빨리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1년을 계속 맞춰서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해서 연계를 하겠지만 6개월은 좀 촉박할 수 있으니까 1년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에 신속하게 정보 연계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안으로, 의견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 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앞에 ISP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그냥 6개월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ISP를 생략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진숙 위원 자살률을 하루라도 빨리 낮춘다는 생각으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물론입니다.

○김윤 위원 내일 ISP 시작하시지요.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그사이에 하시면 될 것 같

은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차관님께서 이해를 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자살 예방과 자살률 낮추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들 열심히 자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연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염려입니다. 저희들이 정보 연계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정보전략계획(ISP)을 생략한다는 전체에서 6개월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약간은 생략하더라도 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두 달 소요가 되면 제가 6개월을 맞추기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윤 위원 그러면 8개월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거듭 제가 1년을 주시더라도 육칠 개월, 칠팔 개월 안에 하겠다는 그런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승낙을 못 받았는데요.

○전진숙 위원 6개월 하시고 그 법안에 대해서 진행이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빠른 대응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2차관 소관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관 소관 중 아까 의결하지 못했던 응급의료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8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병관리청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의결하지 못했던 노인복지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만 김기웅 위원님의 양해에 따라 오늘 소위에서는 제6항과 제63항을 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법 제91조제2항, 제71조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 63항, 이상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발언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요.

○**소위원장 백종현**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최보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아까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오늘 긴급하게 2개 법안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만 저는 같은 취지에서 그래도 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논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저희가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수사 역량이 많이 저하되고 또 보건범죄의 암장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의 복원 및 관련 법안 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됴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최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남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취업 거부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13조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서는接客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서 음성으로 확인되어 전염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는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비해 증상도 없고 위험도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취업 거부 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

염자를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잠복결핵감염자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취업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석 위원 법에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을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통합시스템에 대해서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은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시스템 중 하나인 감염병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방식과 법률상 위탁 근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29조의2제5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검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를 현행 ‘질병관리청장’에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을 의미하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조의2제5항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7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현재 검역정보시스템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의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2건의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정안으로 한지아 의원안과 서미화 의원안 두 가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 검토를 말씀드리면 두 제정안은 각각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총 8개 장 5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정안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체계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관리, 예방접종약품의 수급·관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조사 및 피해보상 등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대체로 승계하고 있고 다만 예방접종의 정의 등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정안의 공통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안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을 각각 정의하고 있고 둘째,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특별자치시장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예방접종 내역 사전 확인, 예방접종약품 품질 이상 신고 및 조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방접종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등이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는 국가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정안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한지아 의원안은 기타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서미화 의원안은 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의원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피해보상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지아 의원안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한지아 의원안은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재심사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서미화 의원안은 별도의 이런 위원회를 두지 않고 예방접종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정안의 주요 체계에 대해서 목차를 쭉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는 감염병예방법 규정 이관 사항을 저희가 두 페이지에 정리하였고 그다음 12페이지에 감염병예방법 이관 규정 외 추가 규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예방접종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훼손·변경·위조·유출 등에 관한 벌칙이나 그 외 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므로 법률 간 중복 및 충돌 방지를 위해 제정법 내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서미화 의원안 41조 부담금 관련해서 이 내용은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의학적 인과성이 결여되어 과태료 부과 시 의료진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현장에 과도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요.

7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약품 구매·비축·공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두 제정안은 예방접종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구매·비축, 계획 생산 및 분배기준, 예방접종약품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의 보고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지아 의원안 31조와 서미화 의원안 33조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계획의 보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약사법 제69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약사법 준수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제정안에도 서류제출 명령 및 질문·검사 규정이 있는데 이는 예

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 현황 등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91쪽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지아 의원안은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고 서미화 의원안은 예방접종위원회가 그걸 다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5쪽입니다. 피해보상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의원안 제41조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백신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여기 의약품에서 제외되고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안의 부담금은 백신 관련 사업자에게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게 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백신 등의 안전·품질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할 공공보건정책 비용을 일부 민간에 이전하고 백신 가격·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비용분담 원칙과 국가재정의 지속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제정안의 내용에 정부 측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감염병예방법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법해서 예방접종이 감염병의 어떤 방역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라든지 기관의 의견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대부분 그 쟁점을 해소했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구를 수정해서 정부 측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대안 조문을 배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병관리청에서 준비한 정부대안을 배포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법안 내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대부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의 조문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두 의원님의 조문을 수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국가예방접종의 정의가 발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행 감염병예방법과도 동일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그 예방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쪽의 5호입니다.

6호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저희는 이상반응을 나눠서 이상사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WHO라든지 식약처의 관련 규정도 이상사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상사례와 이상반응의 차이는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만 있는 거고 이상반응은 시간적 관련성 이외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이상반응으로 분류해서 예방접종 후의 신고 대상으로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 부분은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정부대안 12조(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정의에서 국가예방접종의 정의를 질병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정부대안 중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이 부분이 지금 감염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질병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정부대안 19조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 시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19조를 서미화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43쪽입니다.

정부대안 기준으로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생산 계획의 보고 등) 부분입니다. 이 부분 3항을 한지아 의원님 발의안하고 서미화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약품의 수급 관리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약사법상의 목적과 차별성을 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제45조(국고보조) 부분입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관리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부대안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동일한 체계이고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수정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와 부담금 부분에 대한 쟁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56쪽, 한지아 의원 발의안 제38조를 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38조하고 39조를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는 예방접종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62쪽, 서미화 의원님 발의안의 제41조 피해보상 부담금 조항입니다.

부담금 조항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해 주셨듯이 현행 약사법에는 피해구제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약사가 일정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접종법에 명시해서 국가예방접종에 들어오는 제약사와 수입사도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한 결과 기획예산처도 이 부담금 신설 자체에 반대는 하지 않으나 부담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또 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청 의견은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부담금 조항의 유지가 문제가 된다면 이번 제정안에서는 부담금 조항 없이 한지아 의원안처럼 가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기존의 감염병예방법에 속해 있던 예방접종제도를 별도의 안으로 준비한 제정안인데요. 사실 지금 질병청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이라든지 또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꼭 제정돼야 된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지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랑 같이 조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해 주셨는데……

부담금 조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약품도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요. 백신도 당연히 부담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이 있었는데 기획처나 일반 부처에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라도, 오늘은 부담금을 부여하는 이 조항이 이 법에서는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획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저는 빼는 것도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 위원 3페이지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이야기하실 때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맞나요,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이상반응은 지금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6호에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에서 ‘인하여’가 인과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 심의하실 때, 그러니까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얘기하시면 지금 코로나19에서 심의하는 것과 이 법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그것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예방법이나 예방접종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반응인 경우에 기저질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질병청이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계시잖아요, 기존에도. 다른 국가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그게 인과성이 있는 이상반응이라고 인정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시는데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게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기존에 질병청이 해 오던 인과성의 인정 방식과 이 법의 정의가 잘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코로나 특별법에 따라서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성의 추정을 전혀 저희가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과성 자체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좀 더 폭넓게 보상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이상반응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술적으로 어떠한 백신과 반응에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자는 취지이고 이것과 보상의 기준과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조항 자체는 직접적으로 보상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사례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으셨던 모양인 거지요? 그러니까 6호는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인과성의 개연성이 이상사례보다는 더 높은 경우로 이해해야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예방접종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 우리나라는 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될 예방접종의 범위를 검토는 하고 있고 현재는 막대한 재원이라든지 부처마다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김윤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과학적인 결정이나 정책적인 결정이나 또는 정치적인 결정이나를 여쭙보는 거고 이 예방접종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을 국가예방접종으로 할 건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0조 2항 2호에.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김윤 위원** 그런데 이 예방접종위원회의 구성은 그냥 전부 다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소위 OECD를 포함한 선진국 27개국 중에 17개 국가가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을 지금 국가예방접종에 못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전문가들하고 돈 주는 기획처하고 질병청하고 모여서 결정할 사항이냐라는 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국민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3항의 제3호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적 결정이나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방접종의 어떤 효과성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용 효과성을 같이 본다, 우선적으로는 검토한다라는 것들은 전 세계 예방접종 도입과 관련해서 모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프로세스이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틀 내에서 예방접종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

○**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왜 국민이 안 들어가 있냐. 이게 다분히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인데 그 정책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왜 빠져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지금 답변을 드린 대로 3호에 따라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각계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라든지 법인단체를 조금 구체화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김윤 위원** 3호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하는 법인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어떤 단체, 예를 들면 의사협회나 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일반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3호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국민대표나 소비자단체 대표를 추천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였나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소비자단체 대표는 현재도 이 조항에 따라서……

○**김윤 위원** 3호를 근거로 해서 누구를 위원으로 추천하실 생각이었나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그러니까 관련 분야라고 하는 게 꼭 예방접종과 관련된 의학적인 전문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 위원** 아니, 누구를 생각하고 3호를 넣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그것은 더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김윤 위원** 그러면 소비자단체 대표가 여기 들어가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그럼에 따라서 법조인일 수도 있고 소비자단체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구성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5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비율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추후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일을 하는 방식이 너무 과도하게 전문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하는 업무가 실제로는 상당히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무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술과 과학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저희가 이 부분은 대통령령을 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2건의……

○**전문위원 박동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고드릴 게 있는데요.

대비표 72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해당 의원 발의안에서는 의사 등이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약간 이것에 대해 삭제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여기 보면 수정수용이라고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부칙에서 보시면 지금 행안부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5년 동안만 존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인식하시고 논의를,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종현** 전문위원 말씀에……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복지부안대로라고 한다면 그 5년의 기한에 한계를 두는 것이 별로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동찬** 복지부에서 그것을 행안부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존속기간을 5년

으로 하는 걸로 저희 부칙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이 법은 또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또 해 줘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5년을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동찬 행안부 쪽에서 설명을 하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행안부 쪽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자구를……

○전진숙 위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규정 어느 지점에선가 이를테면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다시 부칙을 개정해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것을 또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계속 존속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전진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질병청은 이게 부담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지금 기재부가 예산처에서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기본적으로 질병청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기획처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 과정에서는 좀 이것을 빼고 가고 추후에 이 조항을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2건의 예방접종관리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교홍 김기웅 김 윤 박용갑 백선희 백종현 서미화 서영석 전진숙 최보윤

○청가 위원(2인)

소병훈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

제2차관 이형훈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연금정책관 손호준

노인정책관 최봉근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공공의료정책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질병관리청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 장호연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